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사(비상임) 초빙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기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2023. 2. 1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

1. 모집분야

모집직위	근무형태	인원	임기
감사	비상임 임원	1명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

2. 자격요건

- 의료분쟁조정·중재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
- 우리 원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의료법」 제66조 제1항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감사후보자 추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

3. 제출서류

- 임원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첨 양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첨 양식]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지원서 상의 모든 경력)
- 대학이상 졸업증명서 1부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명서류 일체

4.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3. 2. 13.(월) ~ 2. 27.(월), 18:00까지(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110 서울시티타워 20층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

5.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일시·장소 개별연락)

6. 기타사항

- 임원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추천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
(02-6210-0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